

글자체디자인과 관련된 사례

사례) 甲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자로서 얼음 또는 수정(crystal)과 같이 날카롭고 예리하면서도 광채가 나는 특이한 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글자체(A)를 개발하였다. 이후 甲은 A글자체의 특이한 형태를 권리화하기 위해 디자인등록출원(X)를 하고자 한다. 다음 설문에 답하시오.

- (1) 甲은 글자체디자인A에 관한 한글글자체를 등록받고자 한다.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출원 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간략히 논하라.
- (2) 甲이 글자체디자인A에 대하여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를 함께 1디자인등록출원하였다. 당해 출원의 등록가능성에 대하여 간략히 논하라.
- (3) 심사관은 甲의 출원 전 이미 당해 업계에서 수정(crystal)체라는 한글글자체가 존재하고, 이 서체와 甲이 출원한 글자체디자인A는 상호 간 구성을 모양을 변경하거나 곡선 또는 기울기를 변경하는 처리 등에 의한 부분적 변경이라고 판단하였을 경우 X출원의 등록가능성에 대하여 논하라.
- (4) 甲의 출원이 적법하게 등록된 이후 인쇄업자 乙이 글자체디자인A와 동일한 글자체를 사용하여 동화책을 인쇄하고 있다면 乙의 이와 같은 행위는 甲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논하라. 이율러 乙이 생산한 동화책을 대형서점인 丙이 판매하는 경우 甲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논하라.

I . 문제의 제기

글자체디자인과 관련하여 2005년 7월 1일 시행법에 의한 법적 취급을 검토한다. 설문 (1)의 경우 글자체디자인의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 및 이와 관련된 공업상 이용 가능성 위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고, 설문 (2)의 경우 글자체디자인 출원이 1디자인 1출원주의를 만족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설문 (3)의 경우 글자체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의 기준을 검토하여 신규성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설문 (4)의 경우 글자체디자인권의 효력 제한과 관련하여 법 제44조제2항을 검토한다.

II . 글자체디자인의 법적 취급

1. 글자체디자인의 의의 및 취지

- 1)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제2조제1호의2) 현행법은 디자인의 정의규정에서 글자체를 물품에 포함시켜 일반적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보호하고 있다.(제2조제1호괄호)
- 2) 종래에는 글자체 개발자는 글자체 개발 시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입하였으나, 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경쟁업체의 도용 및 모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어 글자체의 개발의욕을 상실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여 창의적인 글자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 연혁 및 개정법의 태도

(1) 2005년 7월 1일 시행법 이전

- 1) 구의장법의 경우 독립하여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물품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물품의 형태를 '의장'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물품성을 결여한 글자

체가 의장법상의 의장으로서는 보호받을 수 없었다.

- 2) 저작권법의 경우 인쇄용 서체도안은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용적인 기능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가치를 갖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고,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어야만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글자체의 독특한 미적 외관의 보호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경우 글자체가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경우 그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글자체의 독특한 미적 외관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어서 글자체디자인의 충분한 보호라고 할 수 없었다.

(2) 2005년 7월 1일 시행법 이후

제2조제1호에서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글자체를 포함시켜 물품으로 의제하고, 제2조제1호의2호에서 글자체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글자체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 독자적인 보호객체가 되었다.

3.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

(1) 일반적인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갖출 것

- 1) 글자체디자인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글자체는 물품으로 보며,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다.
- 2) 한편, 글자체디자인은 일반적인 디자인의 성립요건 이외에 이하 특유의 성립요건을 또한 구비하여야 한다.

(2)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 1)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는 정보전달을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2) 다만, ①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하는 서예, 또는 ② 회사 또는 상품의 이름 등을 표상하기 위한 조립문자인 로고타입과 같은 단순히 미적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창작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3)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1) 글자체란 “한 벌의 문자·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으로서, 글자들 간에 통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들을 말한다.

2)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란 개개 글자꼴들이 지니는 모양·규모·색채·질감 등이 서로 비슷하여 시각적으로 서로 닮아 있거나 같은 그룹으로 보이는 형태를 말한다.

(4) 한 벌의 한글 글자꼴, 한 벌의 영문자 글자꼴, 한 벌의 기타 외국문자 글자꼴, 한 벌의 숫자 글자꼴, 한 벌의 특수기호 글자꼴 또는 한 벌의 한자 글자꼴일 것

1) 글자체는 각각의 글자꼴들 간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로서 개개의 글자꼴이 모인 그 전체로서의 조합을 의미한다.

2) 다만, 글자꼴 또는 글자체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 흡결의 효과

상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의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 제5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III.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출원 시 법적 취급
(설문 1)**

1. 출원서(제9조제1항)

1) 일반적인 기재방식을 따라야 하고,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 출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심사등록출원으로 출원해야 하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의 범위 중 N1류의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3) 1디자인 1출원주의를 고려하여 한글·영문자·기타 외국문자·숫자·특수기호·한자 글자체별로 구분하여 각각 출원하여야 한다.

2. 도면의 작성방법(제9조제2항)

1) 글자체디자인의 도면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도면을 도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조제5항)

2)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출원하는 당해 글자체디자인의 종류 및 사용목적 등에 관한 설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창작내용의 요점란에는 공지된 글자체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하며,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창작된 글자체 디자인의 분류를 기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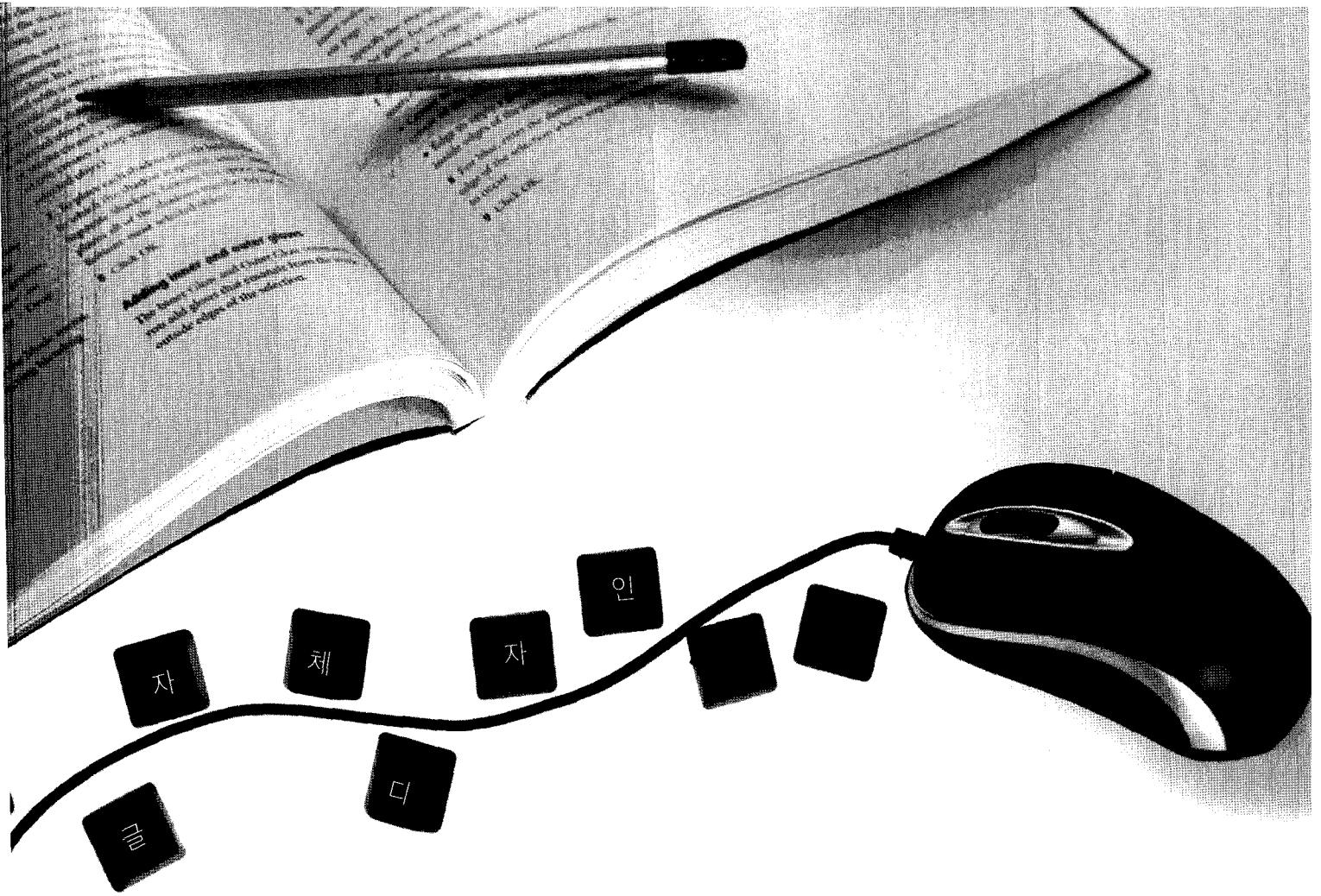
2.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여부(5조1항본문)

1)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이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하는대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 중 일부가 없는 경우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이다.

3. 사안의 경우

甲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에 N1류에 속하는 각 글자체를 지정하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기재하고, 필



수도면인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을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하는 바대로 기재한 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또는 상기 필수도면 중 일부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이 될 수 있다.

IV. 1디자인 1출원주의 위반여부(설문 2)

1. 의의 및 흡결 시 효과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것이 원칙이다.(11조1항) 한편, 한글 글자체와 영문자 글자체, 한글 글자체와 특수기호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 등은 함께 1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각각 분할출원할 수 있다.(제19조제1항제1호) 1디자인1출원주의 위반 시에는 11조1항 위반으로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나, 절차적 요건이므로 착오등록 시에는 하자가 치유되고 무심사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사안의 경우

甲은 한글, 영문자 및 특수기호 글자체를 함께 1디자인 등록출원하였으므로, 1디자인1출원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부 글자체에 대한 삭제 보정 또는 각 글자체에 대한 분할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11조1항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V. 신규성 위반여부(설문 3)

1. 신규성의 의의 및 판단방법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글자체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글자체디자인 및 이에 유사한 글자체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5조1항각호) 한편, 글자체디자인의 동일유사여부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4의 N1류의 글자체의 물품의 구분 중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기타 외국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한자 글자체 상

호 간은 유사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출원된 글자체디자인이 i)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에 해당되는 경우, ii) 기존 글자체의 부분적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iii) 기존 글자체의 자족(패밀리 글자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글자체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판단한다.

2. 신규성 위반의 효과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무효사유에 해당하나,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26조2항) 정보제공사유, 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신규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26조3항)

3. 사안의 경우

甲이 한글글자체에 관한 글자체디자인(A)을 출원한 경우 甲의 출원 전 이미 수정체라는 한글글자체가 존재하고, 이와 甲의 글자체디자인A는 상호 간 구성요소의 모양을 변경하거나 곡선 또는 기울기를 변경하는 처리 등에 의한 부분적 변경이라고 판단되므로 심사기준에 의하면 상호 유사한 글자체디자인이라고 판단되는 바 甲의 출원은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VII. 글자체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여부(설문 4)

1. 글자체디자인권의 효력 및 제한

- 1) 글자체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된 글자체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등록된 글자체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글자체디자인을 실시하는 행위는 침해를 구성한다.
- 2) 다만, ①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② 상기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과 같이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글자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제44조제2항)

2. 사안의 경우

乙이 글자체디자인A와 동일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甲의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디자인을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 이지만, 글자체디자인A와 동일한 글자체를 사용하여 동화책을 인쇄하는 행위는 44조2항1호에 의하면 등록된 글자체디자인A를 통상적인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甲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乙이 생산한 동화책을 대형서점인 丙이 판매하는 경우 통상의 사용에 의한 결과물인 동화책에 대해서는 44조2항2호에 의하여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바, 甲의 글자체디자인A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VII. 사안의 해결

글자체디자인의 출원에 있어서 심사등록출원서를 제출하고,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하는 바대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설문1의 경우 甲은 각 글자체를 분할 또는 일부삭제보정하지 아니하면 등록받을 수 없고, 설문2의 경우 甲의 출원은 종래 공지된 글자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고, 설문3의 경우 인쇄업자 乙과 대형서점 丙의 실시행위는 44조2항에 의거 甲의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발명진흥회](#)



김 용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특허아카데미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합격의법학원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한) 리&목 특허법인 근무